

기니 (Guinea)

●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적용대상	특정 공공부문 근로자 미포함	특정 공공부문 근로자 포함	당연적용 대상 확대
보험료율	12.5%	6.5%	사용자 보험료율 가입소득의 10% -> 임금지급액의 4%로 변경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1,500,000 / 440,000 francs	2,500,000 / 440,000 francs	상한 소득액 증가
가입기간 크레딧 인정 범위	일부 장애관련 급여수급기간만 인정	장애, 출산, 산재, 질병급여 등 수급기간으로 확대	크레딧 인정 범위 확대
연금수급 개시 연령	직업에 따라 55, 60, 65세	직업에 따라 55, 60, 65세	-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 기준)	80%	80%	-
일시금 (노령 및 장애수당)	최종 10년간 월평균 소득 x 보험료 납부기간	최종 10년간 월평균 소득 x 보험료 납부기간	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8년(사회보장)
- 현행법 : 1994년(사회보장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(Social insurance system)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(농업 근로자, 가정 근로자,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, 견습생, 인턴, 기술 학교 학생 포함)
- 임의적용 : 적어도 6개월 연속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
- 적용제외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무원, 군인

4

재원조달

- 가입자 : 가입 소득의 2.5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최저임금(월 440,000 francs)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2,500,000 francs
- 자영자 : 해당 없음
- 사용자 : 임금지급액의 4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월 440,000 francs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2,500,000 francs

※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납부,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분기납
- 정부 : 없음(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로서 납부)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이상이고, 직업에 따라, 55세, 60세 또는 65세 도달
 - 근로는 중단되어야 함
 - 조기노령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이상이고 50세 도달
 - 장애연금 수급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
 -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 - 노령수당
 - 직업에 따라 수급연령은 55세, 60세, 65세. 가입기간(크레딧 인정 가능)이 12개월 이상이나 15년 미만인 경우
 - 특정 조건 충족 시 가입기간의 크레딧 인정이 가능하며, 장애, 질병, 출산 및 산재급여 등의 수급기간이 이에 포함됨
 - 노령수당 해외 지급 불가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
 - 66.7% 이상 소득활동능력 상실 판정, 정상 퇴직연령 미만
 - 보험료 납부기간 최소 5년 이상 (장애가 사고로 발생한 경우, 현재 근로자에 대한 기간 요건 면제)
 - 상시간호수당 :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
- 부분장애수당 : 15% 이상 66.7% 미만의 소득활동능력 상실 판정
 - 장애연금은 정상 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며 상시간호수당을 포함하는 금액과 동일한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장애연금 해외 지급 불가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
 -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, 사망 당시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었던 경우 (크레딧 인정 가능)
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결혼 기간 1년 이상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와 17세 미만 고아 (학생 또는 견습생의 경우 21세 미만)
 - 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인정은 장애, 질병, 출산 및 산재급여 수급 기간과 같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
 - 재혼 또는 동거 시 유족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정지
 - 유족연금 해외 지급 불가
- 장제비 : 유족배우자 또는 유족의 피부양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자
 - 장제비는 해외 지급 불가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
 - 가입자의 최종 10년간 월 평균소득의 2% x 보험료 납부연수 (크레딧 인정 가능)
 - 크레딧을 통한 보험료 납부연수 인정은 장애, 질병, 출산 및 산재급여 수급 기간과 같은 특정조건 충족 시 가능
 - 최대 30년간 분기별 연금 지급
 - 조기노령연금 : 정상수급연령 이전 조기수급 1년당 5%~10%씩 감액
 - 산재로 인한 영구장애연금에 추가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재정 상황 고려, 국민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노령수당 : 가입자의 최종 10년간 월 평균소득 x 보험료 납부기간(크레딧 인정 가능)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 - 크레딧을 통한 보험료 납부연수 인정은 장애, 질병, 출산 및 산재급여 수급 기간과 같은 특정조건 충족 시 가능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재정 상황 고려, 국민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
 - 가입자의 장애 시작 전 최종 12개월간 (가입근로기간 12개월 미만 시 해당 기간에

대한) 월 평균소득의 100%

- 상시간호수당 : 장애연금의 20% 지급
- 부분장애수당 : 가입자 연 평균 소득의 40% 지급
 - 장애연금은 분기별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재정 상황 고려, 국민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던 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
 - 유족배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균분 지급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던 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%를 각 고아에게 지급, 완전 고아에게는 각 20% 지급
 - 유족연금액 상한 : 유족연금의 합계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던 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유족연금은 분기별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재정 상황 고려, 국민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장제비 : 사망자의 3개월 치 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기술교육, 직업연수, 고용 및 노동부(Ministry of Technical Education, Vocational Training, Employment and Labor)
 - 전반적인 관리·감독
 - <http://www.metfpet.gov.gn>
- 국가사회보장금고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행정협의회의 지시를 받아, 제도 운영
 - <http://www.cnssguinee.org>

<2019년 ISSA 자료>